

춘천지방법원 2018. 1. 10 선고 2017가단252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답 453m²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1. 4. 15. 접수 제42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-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답 453m²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1. 4. 15. 접수 제42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1. 4. 16. 소멸시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김창현

별지